

2025년 경기경제자유구역 모빌리티-바이오 첨단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(수요 맞춤형 지원)

경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중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모빌리티-바이오 분야 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「수요맞춤형 지원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4월 29일
(재)경기테크노파크 원장

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경기경제자유구역 모빌리티-바이오 첨단화 지원
 - 세부사업명 : 수요맞춤형 지원
- 주최/주관 : 경기경제자유구역청 / (재)경기테크노파크
- 사업기간 : 2025년 6월 ~ 10월
- 사업목적 : 경기경제자유구역내 입주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한 지원분야를 바우처식으로 제공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진

II 모집개요

- 모집기간 : 2024년 4월 29일(화) ~ 5월 30일(금) 18:00까지
- 지원내용 : 특허출원, 디자인개발, 마케팅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- 지원대상 :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중소,중견 입주기업(입주예정자 포함)
 - 구역 범위 : 평택 포승(BIX)지구, 시흥 배곧지구
 - 입주 형태 :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입주해야 함
 - 모빌리티,바이오 분야 관련 과제에 한하여 지원
- 지원규모 : 8개사 내외, 최대1,000만원/기업 당
 - 총 소요비용(공급가액 기준)의 80% 이내 지원(기업부담금 20% 이상)
- 수행기간 : 과제승인 통보일로부터 10월 30일까지

세부 지원내용

□ 지원 분야별 지원내용

구분	내용		지원 한도(건당)
지식재산권	국내	특허/실용신안/디자인/상표 출원	3,000천원
	해외	PCT/디자인/상표 출원	4,000천원
디자인개발	제품 디자인, 브랜드(BI,CI등) 디자인, UX·UI 디자인 등		6,000천원
전시회 참가	국내	부스 임차료, 기본 장치비, 전시품 운송비 등	5,000천원
마케팅	홍보물 제작	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제작 (국문, 영문 등), 홍보영상	8,000천원
	홈페이지 제작	기업 홈페이지 제작	
	그 외 기업 홍보와 관련된 활동	예시1) 전시회 참가 및 카달로그 제작 등에 필요한 통번역비* * 통·번역 의뢰업체 공식 요율표에 따름 예시2) 전문잡지 광고 등	

○ 신청방법 : 최대 지원가능 한도(1,000만원) 내 신청기업이 지원 분야를
 바우처식 복수 자율구성

*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수행내용 등 조정될 수 있음

사업비 구성 예시

○ **AAA기업** : 지원금 8,000천원(80%) + 기업부담금 2,000천원(20%)

지원분야	마케팅	전시회 참가	계
소요예산	5,000천원	5,000천원	10,000천원

○ **BBB기업** : 지원금 10,000천원(80%) + 기업부담금 2,500천원(20%)

지원분야	지식재산권(국내)	디자인개발	디자인개발	계
소요예산	3,000천원	6,000천원	3,500천원	12,500천원

○ **CCC기업** : 지원금 10,000천원(71.4%) + 기업부담금 4,000천원(28.6%)

지원분야	디자인개발	마케팅	계
소요예산	6,000천원	8,000천원	14,000천원

□ 평가 및 선정 기준

○ (평가방법) 서류검토 및 서면평가

○ (평가기준) 지원의 적합성(25),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(35), 실현가능성(20),
 파급효과(20)로 구성

평가항목	평가내용
지원의 적합성(25)	지원의 필요성 사업추진 의지
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(35)	최종목표의 명확성 수행계획의 적정성
실현가능성(20)	일정별 추진(제작)내용의 합리성(기간 등 고려)
파급효과(20)	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 계획

- (선정기준) 평가위원회 3인의 종합점수 평균 60점 이상을 득한 기업 중, 고득점순으로 선정. 추후 사업 포기자 및 잔여예산 발생 시 차순위 기업 지원
 - * 동점자 발생 시 지원의 적합성, 목표 및 계획의 적합성, 지원의 적합성, 상용화 계획 및 파급효과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
 - * 추가 수요가 없을 경우, 기 지원된 입주기업의 성장성 등이 인정될 경우 잔여예산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(기업당 지원 한도금액(1,000만원) 초과 지원 가능)

□ 과제선정 및 지원방법

-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이후 과제 선정 통보(경기TP → 선정기업)
- 승인된 신청내역에 따라 선정기업은 과제를 추진하고, 과제 추진 완료 후 과제 추진결과(사업비 사용 내역 포함)에 대한 서류 제출
 - * 선정 통보 이전 집행 건, 신청서상 기재되지 않은 집행 건은 불인정
- 결과(증빙)서류 검토 후 신청기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(기업이 소요비용 선 집행)

□ 추진절차 및 일정

추진절차	추진내용	일정
사업공고 및 홍보, 신청접수	○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	~5월 30일
▼		
선정평가	○ 1차 서류검토(신청기업의 자격요건 확인) - 범위반 기업 조회 ○ 2차 선정평가(외부전문위원 구성)	6월 셋째주
▼		
지원기업 선정 및 과제 승인 통보	○ 선정과제 승인 통보	6월 중
▼		
과제추진	○ 선정기업은 승인된 신청내역에 대한 과제추진	-
▼		
완료보고서 제출·접수	○ 완료과제에 대한 결과(증빙)서류 상시 접수	~10월 31일
▼		
사업비 정산 및 지급	○ 결과서류 검토 및 사업비 정산을 통한 지원금 지급	서류접수 후 2주 이내

- 신청기간 : 2025년 4월 29일(화) ~ 5월 30일(금) 18:00까지
-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 (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⇒ 사업공고)
- 제출요령 : 1개의 압축파일로 접수
(예시) (재)경기테크노파크_수요맞춤형지원.zip
- 제출서류 : 아래 표의 제출서류는 공고일(4월 29일) 이후의 서류로 발급·작성하여 제출

연번	제출서류	제출여부	비고
1	신청서 및 계획서	필수	제공서식
2	사업자등록증명	필수	홈택스
2-1	공장등록증명	해당시	정부24
3	국세완납증명	필수	홈택스
4	지방세 납세증명서	필수	정부24
5	중소, 중견기업확인서	필수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한국중견기업연합회
6	서약서	필수	제공서식
7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(신용)정보 활용 동의서	필수	제공서식
8	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필수	제공서식
9	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여부 확인서	필수	제공서식
10	최근2개년 재무제표(2023년, 2024년)	필수	홈택스 등
11	경기경제자유구역 입주계약서(입주 예정자에 한함)	필수	-

V

주의사항

□ 지원제외 대상

- 2025년에 경기경제자유구역 외부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(지원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기업)
- 동일한 과제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(정부, 자치단체, 조합, 단체, 정부 산하기관 등)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
- 공고기간 동안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 기업
- 과제 신청일 이후 사업기간 중 부도, 법정관리, 휴·폐업 등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운 기업
- 최신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
-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선정 이후 과제추진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
- 신청기업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보완자료 미제출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
-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

□ 기타

- 신청인(신청기업)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보완자료 미제출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(신청기업)에게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, 지원금 환수, 사업 참여제한, 제재사실 공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에 의거해 법위반 사실 확인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 - 적용법률
 - ↳ (공정) ① 공정거래법, ② 하도급법, ③ 표시광고법
 - ↳ (노동) ④ 근로기준법, ⑤ 산업안전보건법
 - ↳ (환경) ⑥ 폐기물관리법, ⑦ 대기환경보전법, ⑧ 소음진동관리법, ⑨ 물환경보전법
 - ↳ (납세) ⑩ 국세기본법, ⑪ 지방세기본법

※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"[별첨]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" 참고

VI

문의처

□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사업 담당자 031)500-3050

경기도 고시 제2025-23호

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

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「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. 1. 17.
경 기 도 지 사

1. 추진목적 :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2. 적용대상 :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
- (도내 기업)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, 영업소,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
3. 적용사업 :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,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
가.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 될 수 있음
나. 사업유형별 조례 적용 제외사업
 - 1) (계도·개선사업)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
 - 2) (사업운영비·소액사업)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, 소액·다수기업 지원사업
 - 3) (비경쟁사업)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
 - 4) (자금·융자지원 사업)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
 - 5) (시·군 보조(매칭) 사업)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른 시군 지원사업
 - 6) (소상공인 지원 사업)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
 - 7) (투자유치 사업)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(인센티브) 사업
4. 위반사실 적용법률 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가. 적용법률
 - 1) (공정)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
 - 2) (노동)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
 - 3) (환경)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
 - 4) (납세)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
 나.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(사업별) 특성에 따라 지침·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
5. 위반사실 조회기간 : 사업 공모일(모집일) 기준 2년 이내
가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
나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·고발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
6. 사업참여 제한조건 : 법 위반 사실 확인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가.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[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(서식2) 내용과 상이]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나.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(사업별)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7. 법위반사실 확인 :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
가. (공정)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
나. (노동)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
다. (환경) 기업 소재지 관할 시·군 조회
라. (납세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

8. 이의 및 구제신청 : 법 위반 사실로 제한 기준 적용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 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(서식3) 제출
가. 사업자선정위원회 등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사업자 선정 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
※ 기업의 권리구제,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
나. 삭제

9. 제출서류 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서식1), 기업의 범위반사실(부존재) 여부 확인서(서식2)

10. 고시 효력일 : 고시일 ~ 차기 고시일 전까지

11. 문의처 :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(☎031-8030-2992, -2995)

붙임 1. (서식1)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2. (서식2) 기업의 범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인서